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23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779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5. 3. 17.
판 결 선 고	2015. 4.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7.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33,401,350원, 지방교육세 1,908,630원, 농어촌특별세 2,385,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23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은 2009. 11. 24. D와 사이에 [redacted]시 E 대 998㎡, F 답 401㎡, G 공장용지 2,589㎡, H 도로 42㎡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그 매매대금을 500,000,000원으로 하되, 그 계약금 및 중도금은 이전에 망 C이 [redacted]시 I 토지 등 4필지를 D의 남편인 J 등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지급받았던 계약금 450,000,000과 중도금 80,000,000원으로 충당하고, 매매잔대금 375,000,000원은 망 C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비용, 등록세, 취득세 기타 공과금은 모두 D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인 2010. 5.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D는 2012. 9. 26. [redacted]지방법원 2012가합81710호로 망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K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할 것을, 주식회사 우리은행, L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3. 28. 위 법원으로부터 망 C을 상대로 하여서는 37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K, 주식회사 우리은행, L를 상대로 하여서는 D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이에 불복하여 망 C, K, L가 항소를 제기하였고([redacted]고등법원 2013나27697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23

위 소송 계속 중인 2013. 9. 1. 망 C이 사망하여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망 C의 소송을 수계하고, 망 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위 소송은 2013. 12. 3. 원고들과 D 사이에 '원고들은 D로부터 2014. 2. 3.까지 37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A은 각 3/5 지분, 원고 B은 각 2/5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D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에 관한 서류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2014. 2. 3.까지 37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

바. D는 원고 A에게 2014. 1. 10. 80,000,000원, 2014. 3. 4. 295,00,000원 합계 37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3.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망 C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2014. 4. 7. 원고들에게 취득세 33,401,350원(= 취득세 본세 33,331,360원 + 가산세 69,990원), 지방교육세 1,908,630원(지방교육세 1,904,640원 + 가산세 3,990원), 농어촌특별세 2,385,800원(= 농어촌특별세 2,380,810원 + 가산세 4,990원)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였다(이하 위 납세고지서 발행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이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아니라 망 C의 D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23

대한 매매대금채권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채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들은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직접 취득세 신고를 하거나 D 또는 M 변호사 등에게 취득세 신고를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적법한 취득세 신고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들은 2014. 1. 8.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들의 납세의무를 확정시켜 부과하였으며, 원고들이 납기일까지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미납부 취득세액 등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이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같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고, 이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을 때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이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23

고는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미납부 취득세액, 지방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에 각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는 것인바, 위 납세고지는 원고들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취득세액 등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액이 확정되어 납부의무가 발생하면, 설령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이 경정되지 않는 한 당초의 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징수처분이나 그 가산세 부과·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에서 당초 신고의 당부를 가지고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고 할 것이나,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법령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때에는 그 하자는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한 것이고, 따라서 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취득세 신고가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바, 만약 위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면 유효한 신고행위에 의해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게 되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다툴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23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신고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부분에 한하여 다툴 이익이 있는바, 원고들이 제3자에게 취득세 신고행위를 위임한 사실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 변호사,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D는 [redacted]고등법원 2013나27697호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등록세 또는 취득세 등 지방세가 부과되면 D가 그 세금을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조정조항 제5항),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자 위 사건에서 원고들을 대리하였던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인의 N 변호사는 2013. 12. 말경 M 변호사에게 D의 남편인 J이 사무실을 방문할 것이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취득세 납부 문제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상담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 그리하여 J은 이에 관하여 M 변호사와 수시로 상의하였고, M 변호사는 J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업무를 진행하면서 2014. 1. 8. 원고들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액과 세율을 신고한 사실, 위 취득세 등 신고서에는 N 변호사가 원고들로부터 교부받은 [redacted]고등법원 2013나27697호 사건의 조정조서 사본, 망 C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23호증의 기재는 이 사건 결과에 관한 D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줌에 있어 원고들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D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23

서 당연히 그에 필요한 취득세 등 신고행위도 D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D는 M 변호사를 통하여 취득세액을 신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취득세액의 신고행위는 원고들의 위임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사 이러한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의 위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할 정도로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취득세액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남천

판사 김윤희

판사 김윤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23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23

■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하는 때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끝.